# Ⅲ 의료자문제도: 의료전문심사제도와 의료사고감정단

국내 보험회사의 의료자문제도는 표준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하고 설명 및 공시 의무를 강화하는 등 규제체제의 정비가 이루어졌음에도 여전히 제3의료기관 선정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소비자신뢰도가 낮다. 이와 달리 국토교통부 산하 공제분쟁조정위원회 내 의료전문심사제도와 의료분쟁조정중재원 내 의료사고감정단은 공신력 있는 의료자문 및 의료감정 제도로 자리매김하고 있다.[25] 본 장에서는 건강보험과 관련된 의료자문의 운영에 참고하기 위하여 의료자문 및 감정업무를 하고 있는 공제분쟁조정위원회와 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대해 살펴본다.

## 1. 의료전문심사제도

국토교통부 산하의 공제분쟁조정위원회(이하 '분조위'라 함)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70조에 따라 자동차 사고 피해자와 6개 공제조합(택시공제, 화물공제, 버스공제, 개인택시공제, 전세버스공제, 렌터카공제) 간의 분쟁을 조정하기 위해 설치된 위원회이다.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은 2019년부터 분조위 사무를 위탁받아 수행하고 있으며 매월 자동차 사고로 발생하는 다양한 분쟁을 조정하고 있다. 분조위는 내부에도 전공과목별로 의료 전문가가 있지만 의료자문의 공정성을 제고하고자 2021년 7월부터 별도로 '의료전문심사제도'를 도입하였다.

### 가. 의료전문심사제도 개요

의료전문심사제도는 사업용 차량 자동차사고 피해자와 공제조합 간 분쟁 사안에 대해 의료전문심사위원의 의학적 전문 소견을 받아 분쟁을 해결하는 절차이다. 의료전문심사 대

25)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 보도자료(2022. 5. 4), "자배원, 자동차공제조합 민원서비스 개선 성과"

상이 되는 의료분쟁 사안으로는 피해자의 치료와 교통사고 간 인과관계 여부, 피해자의 장애평가 적정 여부 및 예상장애 평가, 기타 진료내용 관련 분쟁 등이 있다.

의료전문심사위원은 국토교통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위원장이 위촉하며 전문의학회 학회장 및 이사 출신의 대학병원급 교수진으로 구성된다. 구체적으로 위촉의 기준을 살펴보면 국·공립의료기관, 의과대학 부속병원, 기타 종합병원 등에 종사하는 과장급 이상 및 이에 준하는 경력자, 의과대학의 부교수급 이상 및 이에 준하는 경력자, 기타 전문의로서 상기 항목에 상당하는 임상경력자 중에서 심사하여 위촉한다. 이때 의료전문심사위원은 보험회사와 관련이 없는 사람[26] 중에서 위촉함으로써 공정성과 중립성을 지향한다.

의료자문비에 해당하는 심사 수수료는 진료과별로 다르나 통상 건당 20만 원이고 신청인이 부담한다. 의료자문비 외 의료전문심사제도 운영에 드는 비용(시스템 전산개발비, 인건비 등)은 국토부와의 협의하에 6개 공제조합이 지불한 일반분담금 재원으로 충당한다.

## 나. 의료전문심사제도 업무처리절차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은 '의료전문심사 전산시스템'을 구축하여 2022년 7월부터는 우편발송이나 직접 방문 신청뿐만 아니라 온라인[27]을 통해서도 의료전문심사 신청이 가능하다. 온라인을 통해 신청할 경우에는 심사 결과를 온라인으로 조회할 수 있으며 처리현황 또한 SMS로 통보받을 수 있어 소비자 편의성이 향상되었다.[28] 이때 의료전문심사의 신청은 보험회사뿐만 아니라 피해자나 피보험자도 가능하다.

의료심사가 접수되면 신청인뿐만 아니라 피신청인에게도 접수 내용이 통지되고, 의료분쟁의 양쪽 당사자 모두에게 자료 및 의견을 받아 심사에 반영하되 분쟁당사자의 이해관계 개입은 차단함으로써 중립성을 갖추고자 하였다. 의료심사를 위한 자문의 선정은 국토부 위촉의 의료전문심사위원을 순차적으로 배정하며 심사가 완료되면 그 결과는 신청인과 피신청인 모두에게 통지된다. 이때 심사결과의 회신은 의료전문심사위원의 전문적이고 구체적인 의학적 논거와 설명을 통해 이루어지도록 한다. 심사위원의 1차 심사 후 회신 결과는 위원장의 최종 재가를 통한 검증 절차를 거친다. 의료전문심사위원의 신변 보호를

26) 의료전문심사위원 위촉 시 보험회사의 의료자문에 자주 참여했던 의료 전문가는 배제함

27) 국토교통부 공제분쟁조정위원회 홈페이지

28)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 보도자료(2022. 7. 4), "공제분쟁조정 의료전문심사제도 이용, 더욱 쉽고 편리해진다"

위해 심사결과 회신서는 위원장 명의로 나가며 소속 의료기관 등 심사위원에 대한 일체의 개인정보를 공개하지 않는다. 한편, 의료전문심사 결과는 의료분쟁 당사자 간 분쟁해결을 위한 참고자료로서, 심사 결과가 법적 구속력을 지니지는 않는다.

〈그림 Ⅲ-1〉 의료전문심사제도 업무처리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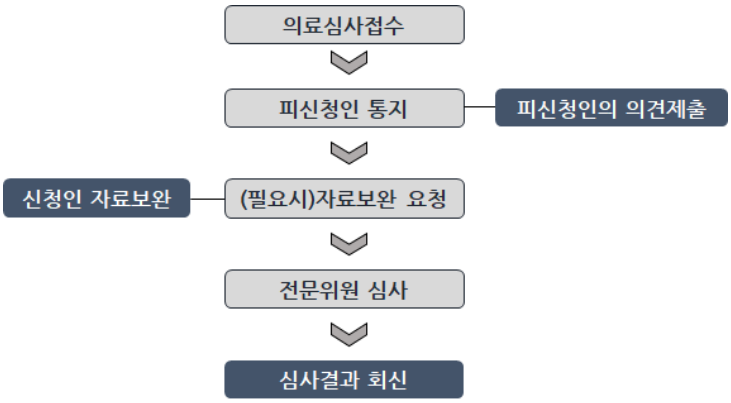


자료: 국토교통부·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2022)

## 2. 의료사고감정단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하 '조정중재원'이라 함)은 의료분쟁조정법에 따라 의료분쟁을 신속·공정하고 효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설립된 법인으로, 의료분쟁을 조정[29]하거나 중재[30]하는 업무를 한다. 조정중재원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산하에 의료사고감정단(이하 '감정단'이라 함)을 두는데, 감정단은 의료분쟁의 조정 또는 중재에 필요한 사실조사, 의료행위 등을 둘러싼 과실 유무 및 인과관계의 규명, 후유장애 발생 여부 등 확인, 다른 기관에서 의뢰한 의료사고에 대한 감정업무를 한다.

29) 조정은 대체적 분쟁해결절차(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 ADR)로서 소송과 다른 특성을 가짐. 조정은 조정기관이 당사자에게 분쟁대상에 관련된 법률관계를 설명하고 합리적인 선에서 서로 양보하여 분쟁을 원만하게 해결하도록 설득하여 당사자 사이의 자발적인 합의를 권유하고 필요한 경우 적절한 합의안을 제시하여 분쟁해결을 시도하는 절차임

30) 중재는 대체적 분쟁해결절차로서 당사자 사이의 중재합의에 따라 사법(私法)상의 분쟁을 법원의 재판이 아닌 중재인의 판정에 의하여 해결하는 절차임

## 가. 감정단 및 감정부의 구성

감정단은 단장 및 100명 이상 300명 이내의 감정위원으로 구성하고 단장은 비상임으로서 보건의료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원장의 제청으로 보건복지부장관이 위촉한다. 감정단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상임 감정위원 및 비상임 감정위원으로 구성된 분야별·대상별 또는 지역별 감정부를 둘 수 있다. 감정부는 감정위원 5인으로 구성되는데 분야별 전문의, 치과의사, 한의사 등 보건의료인 2명, 검사,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법조인 2명, 소비자권익위원 1명을 포함해야 한다. 감정부의 장은 보건의료인 감정위원 중에서 단장이 지명한다. 감정부는 감정위원의 업무를 보좌하기 위하여 조사관(의사·치과의사 및 한의사, 약사, 한약사, 간호사 등 자격보유자)을 둘 수 있다.

의료사고의 사실 관계를 규명하는 감정단의 업무는 전문적인 의학지식이 필수적이기 때문에 감정부 구성에서 보건의료인의 역할이 중요하다. 의료인 감정위원 인력풀 구성을 위해 조정중재원은 전문의학회에 주기적으로 의료 전문가 추천을 의뢰하고, 연간 방문하여 업무 협조를 요청하기도 한다. 한편 의료사고와 관련된 사실 판단은 의학적 판단이 아니라 규범적 판단의 영역이다. 따라서 감정부는 의료인과 법조인을 각 2명씩 포함하여 의학적 판단과 규범적 판단의 균형을 맞추기 위한 인적 구성을 하고 있다.[31)]

## 나. 감정부의 감정절차

감정부는 조정절차가 개시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감정서를 작성하여 조정부에 송부하되, 필요한 경우 그 기간을 1회에 한하여 30일까지 연장할 수 있다. 감정서에는 사실조사의 내용 및 결과, 과실 및 인과관계 유무, 후유장애의 정도 등을 기재하고 감정부의 장 또는 감정위원이 서명하여야 한다. 감정서의 감정소견에는 그 판단 근거 및 이유를 적어야 하나 감정위원 전원의 일치된 감정소견의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 감정부에서 감정결과를 의결함에 있어 감정위원의 감정소견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감정위원의 소수의견도 함께 기재하여야 한다.

31) 최연석(2021)